



# 국내인력 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우대 기준 고시

**건** 설교통부는 건설업자로서 해외건설촉진법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현장에 국내인력을 고용한 자에게 시공능력평가지 우대키로 함에 따라 지난 4월 15일 국내인력 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우대 기준을 고시하고 해당협회에 시달했다.

이 우대는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지부터 적용된다.

## 1. 대상 및 가산금액 범위

- 1) 대상업체 : 건설업자로서 해외건설촉진법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을 신고하고 해외건설현장에 국내인력을 고용한 자
- 2) 가산금액의 범위

고용인원수	가산금액
1,000명 이상	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2.0
800명 이상 ~ 1,000명 미만	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.8
600명 이상 ~ 800명 미만	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.6
400명 이상 ~ 600명 미만	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.4
300명 이상 ~ 400명 미만	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.2
200명 이상 ~ 300명 미만	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.0
100명 이상 ~ 200명 미만	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0.9
50명 이상 ~ 100명 미만	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0.8

고용인원수	가산금액
10명 이상 ~ 50명 미만	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0.7
1명 이상 ~ 10명 미만	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0.6

\* 중소기업(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: 상시종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 미만)의 경우는 가산금액의 2배 반영 (다만, 100분의 2를 초과하지 못함)

**2. 평가기준**

- 1)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 연도 기준으로 해당업체가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국내인력의 수에 의하여 평가한다. (단,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에 한하여 1인으로 산정)
- 2) 해당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국내인력의 수를 기준으로 하며, 하도급업체 또는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인력의 수는 제외한다.

입국사실증명원 및 근로계약서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외건설협회에 제출·확인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신고서 제출시 건설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시공능력평가·공시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지정기관(대한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건설산업관리협회 등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3. 평가방법**

- 1) “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”로서 시공능력평가지 신인도평가액에 가산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“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 [펼지1]”를 작성, 출

- 2) 당해 협회는 건설업자가 제출한 “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”에 의하여 확인·평가하여야 한다.

**4. 적용시기**

이 고시는 2006년도 시공능력평가 공시일부터 적용한다.

